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재공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8. 13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### 1. 융자규모 : 50,000천원

### 2. 융자대상 및 조건

- 융자대상: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
- 융자 및 상환조건

융자종류	대 상	융자한도	금리	상환조건
시설개선자금	일반·휴게음식점, 제과점, 위탁급식소, 식품제조·가공업소	5천만원	연2%	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	식품접객업소 화장실	2천만원	연1%	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

※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 함

※ 융자신청 시 은행 규정에 의한 담보 필요(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)

#### 《제외대상》

- 혐오식품의 제조·판매·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
- 호프집·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
-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

### ○ 사용용도

- 시설개선자금: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 구입 설치

### 3. 용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(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9조)

- 시설개선자금의 용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용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
- 유흥·단란주점, 혐오식품취급업소, 호프집·소주방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
-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
- 서울시 영등포구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
(단,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)

### 4. 용자신청: 영등포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

- 신청기간: 2024. 8. 13. ~ 자금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: 방문신청 (평일 9:00 ~ 18:00, 점심시간 제외)
- 구비서류
  - ①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 1부.
  - ② 사업계획서(견적서 첨부) 1부.
  - ③ 사업이행확약서 1부.
  - ④ 영업신고증 사본 1부.
  -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※ 사업을 완료 시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(용자금 입금 통장사본, 시설개선 완료사진,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첨부) 제출

### 5. 문의사항: 영등포구 보건위생과 박신재 주무관 (☎02-2670-4709)